

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참고사항

대학원교학팀(2026.05.)

<p>관 련 규 정</p>	<p>대학원시행세칙 (제6장 학위 청구 논문) 제36조 (심사위원회의 정족수)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하며,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4/5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 제37조 (심사방법)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논문심사는 논문 제출자의 출석 없이 하며 구술시험은 논문 제출자를 출석시켜야 한다. ② 각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논문 제출자의 소속, 성명, 논문 제목, 심사 일시와 장소 등을 제시하여 공개 심사토록 한다. 다만,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1회를 원칙으로 하며,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구술시험 1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38조 (합격기준) ① 석사학위논문의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전원의 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 판정한다. ② 박사학위논문의 합격기준은 재적 심사위원의 4/5 이상의 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 판정한다. ③ 전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논문 표절검사프로그램을 활용한 후 표절검사프로그램 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논문표절율이 10%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합격판정을 받는다. 단, 논문 표절율이 10%이상 20%미만인 경우 논문심사위원장이 표절검사 상세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합격 판정할 수 있다.</p>
<p>논문심사 일정</p>	<p>2026. 06. 12.(금)까지</p>
<p>심사위원회의 정족수</p>	<p>① [석사] 심사위원 3명 전원 출석으로 심사 ② [박사/통합] 심사위원 5명중 4명 이상 출석으로 심사</p>
<p>심사방법</p>	<p>① 논문 심사는 서면심사와 구술로 나누어 진행 ② 구술은 논문 제출자가 출석하여 공개 심사로 진행 (단,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) ③ 논문 심사와 구술은 석사학위 과정은 1회를 원칙으로 하며, 박사학위 과정은 구술시험 1회를 포함, 최소 2회 이상 진행</p>
<p>합격기준</p>	<p>① [석사] 심사위원장 포함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② [박사/통합] 심사위원장 포함 심사위원 4명 이상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③ 논문 표절율이 10% 미만인 경우 합격</p>
<p>논문제목 변경</p>	<p>① 논문 제목이 변경 된 경우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에 변경 전과 변경 후 논문제목에 각각 입력(제목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 전에만 논문제목 입력) ② 종합정보시스템 논문제목 수정 (졸업시스템-> 학위논문-> 논문신청-> 논문제목(국·영문) 수정-> 저장)</p>

논문심사 취소	2026.05.29.(금)까지 학과사무실에서 논문심사 취소 신청서가 첨부된 공문 제출 (논문심사비 환불과 관련하여 '논문심사' 진행 여부 기재 필수)
논문 심사비 납부	2026.06.10.(수) ~ 06.12.(금) (별도 안내 예정)
논문 원제본 온라인 제출	2026.07.06.(월) ~ 07.09.(목) (별도 안내 예정)

■ 표절검사프로그램(카피킬러) 판정결과 및 제출서류

구분	판정	제출서류
표절율 10% 미만	합격	①표절검사프로그램 활용 결과보고서 1부 ②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1부
표절율 10% 이상 ~ 20% 미만	상세검토 의견서 제출 시 합격 가능	①표절검사프로그램 활용 결과보고서 ②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1부 ③표절검사 상세검토 의견서(심사위원장 작성)
표절율 20% 이상	불합격	①표절검사프로그램 활용 결과보고서 ②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1부

※ 절차안내:

심사 대상자(학생)-> 결과보고서 출력(기본보기)-> 확인란 지도교수 서명-> 심사용 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에게 제출->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심사(표절율 10%~20%의 경우 표절검사 상세검토의견서 심사위원장이 직접 작성)